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매출액 산정에 곤란한 가맹점에 대한 등록 거부 등〉
■ 오세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285호)

2026. 3.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매출액 산정에 곤란한 가맹점에 대한 등록 거부	3
2. 비 가맹점의 가맹점 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오세회의원 등 14인
2. 제안연월일 : 2026. 1. 23.
3. 회부연월일 : 2026. 1.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제도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 매출액이 법률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소비 진작 정책 시행기준을 초과하는 자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신규 사업을 하거나 새롭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경우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가맹점이 아닌 자가 자신의 물품을 다른 개별가맹점의 명의로 판매하고 그 대가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음.

이에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개별가맹점의 명의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투명하

고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제4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매출액 산정에 곤란한 가맹점에 대한 등록 거부

개정안은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생 략)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②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4.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u>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동법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지역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법 제7조제2항제2

호1)에서는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행정안전부는 이에 더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2025.9)’을 통해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3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① 정책필요에 따라 현금성지원을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경우, ② 비영리·공익적 성격의 플랫폼사업장, ③ 민간 농자재 판매소가 없는 면지역 내 농협 농자재판매장 및 ④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면’ 지역 내 농협 하나로마트는 등록을 허용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2025.9)상 가맹점 등록 허용범위]

(원칙)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 제한

(예외) 다만,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가맹점 등록 가능

- ① 정책적 필요에 따른 현금성 지원 등을 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하는 경우

* (예시) 농민수당·아동수당,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등 정책발행 상품권

- ② 비영리·공익적 성격의 플랫폼사업장

– 지역 농민·소상공인 판로 지원 및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농산물직거래사업장 : 공공형(지자체 직·간접적 운영), ‘면’ 지역 민간형 로컬푸드직매장 등

※ 매장 자체는 비영리 성격, 개별 농민·소상공인이 직접 수익을 취하는 경우여야 함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 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생산·유통 및 판로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 사업장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생협 등

③ 민간 농자재판매소가 없는 면 지역 내 농협 농자재판매장

④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유형 분류상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에 포함되는 가맹점이 없거나, 유사업종 가맹점이 있더라도 ㉠접근성이 매우 낮거나, ㉡판매품목·규모·업종형태 등 고려 시 종합소매업으로 보기 어려운 ‘면’ 지역 내 농협 하나로마트

자료: 행정안전부

이처럼 등록이 가능한 가맹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매출액 산정이 필수적인데,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상 가맹점 등록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자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기업의 가맹점 등록을 거부하게 되면, 규모가 영세한 신생 사업체 등도 일률적으로 가맹점에서 배제되어 오히려 소상공인 보호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 비 가맹점의 가맹점 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개정안은 가맹점이 아닌 자가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다른 가맹점의 결제시스템을 통해 수취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0조).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제20조(과태료) ① ----- ----- ----- --.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수행한 자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제1항 ²⁾ 을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	2. ----- ----- -----수행하거나 자신의 물품을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다른 개별가맹점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대여받아 수취한 자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규정이 있을 뿐,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가맹점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취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개정안은 비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가맹점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취하는 비정상적인 영업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탈법적인 영업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행정안전부는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가맹점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취한 자도 현행법 제20조제1항제2호3)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이에 따르면, 개정의 실익이 낮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333

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유통 지역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